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3
----------	-----

제출년월일 : 2013. 5. .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인용법 개정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한꺼번에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외 69개 조례 정비

- 인용법 개정 등의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 생략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2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를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22조제6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충주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개정)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한”을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중”로 한다.

제7조(충주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 충주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9호 중 “「충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7호를 삭제한다.

제11조(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개정)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05조”를 “제114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4조제3항, 제5항”을 “제4조의2제1항, 제4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제4조제5항”을 “제4조의2제4항”으로 각각 한다.

제13조(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를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을 “「공공측량 작업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명안내시설규칙”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으로 한다.

제15조(충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개정) 충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충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의 개정) 충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17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8조의2에 의한”을 “제30조에 따른”으로, 제2조
제3호 중 “제21조”를 “제37조”로 각각 한다.

제17조(충주시 시세 감면조례의 개정)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을 “「식품산업
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로 한다.

제18조(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을 “「식품산업
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를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에”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 환자

제21조(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을 “법 제44조의3 제3항과 영 제39조의2제6항에”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한다.

제21조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한다.

제22조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한다.

제23조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한다.

제24조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한다.

제25조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한다.

제26조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한다.

제48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다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과 나목”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여”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로 각각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다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 기반 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충주시 기반 시설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법 제2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

제24조(충주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공업 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토이용관리법」 및 기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각각 한다.

제25조(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로 한다.

제6조제1항6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84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도로법」 제4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시설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제27조(충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1조와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개정)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개정)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 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도로법」 제43조 관련”을 “「도로법」 제41조 관련”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관련”을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으로 한다.

제30조(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충주시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에 의하여”를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중 “「임대주택법」 제18조의2”를 “「임대주택법」 제33조”로 한다.

제32조(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가기반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건축물의 이전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충주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충주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충주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한다.

제36조(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7조(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감염성 질환자

제38조(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9조(충주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의 개정)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6조제1항제11호”를 “제52조제8호”로, “제14조”를 “제50조”로 각각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제4조 중 “제14조제2항 및”을 “제50조제2항과”로, “제10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각각 한다.

제6조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제42조(충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충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43조(충주시 탑평리사적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탑평리사적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감염병 질환자

제44조(충주시 문화 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 조례의 개정) 충주시 문화 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과 영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1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5조(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충주고구려천문 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취한 자

제46조(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택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서 정한”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의 개정) 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를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로 한다.

제48조(충주시 농촌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농촌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49조(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50조(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의 개정) 충주시 지역 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로 한다.

제51조(충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의 개정) 충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를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로 한다.

제51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량입하품
2.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8.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산물

9.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54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에”를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2호에”로 하고, 제2항 중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를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6조 중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를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로 한다.

제53조(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와 리도

제3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의”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54조(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을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7조”를 “「수산업법」 제89조”로 한다.

제55조(충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의 개정) 충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6조(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를 “「소방기본법」 제34조”로 한다.

제57조(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의 개정)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3조제1호 및”을 “법 제3조제1호가목과”로,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를 “법 제3조 제2호가목과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각각 한다.

제58조(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의 개정) 충주시 주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 의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중 “「환경개선 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를 “「환경 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를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제15조를”로 한다.

제61조(충주시 청결의 날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6조제3항 중 “법 제30조의3제1항에 의한”을 “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충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충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와 제2조에 따른 경비

제64조(충주시 지하수 조례의 개정) 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세고지서”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로 한다.

제65조(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 위생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67조(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8조(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한다.

제69조(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을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70조(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개정)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충주시의회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축법」 제2조, 제19조
「공공측량 작업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7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의2, 제44조의3, 제7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9조의2, 제43조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내수면어업법」 제10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14조, 제61조, 제74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18조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24조, 제126조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도로법」 제2조, 제8조, 제31조, 제38조, 제41조, 제76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37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 제14조
「문화재보호법」 제41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법령입안심사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제34조
「소음·진동관리법」
「수도법」 제30조
「수산업법」 제8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식품위생법」 제2조, 제36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23조, 제50조, 제52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임대주택법」 제33조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4조, 제30조, 제3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14조
「지방재정법」 제94조
「지하수법」 제41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94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제15조, 제31조, 제68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한국환경공단법」

「한글맞춤법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